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ir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강원도소방본부 고기봉 · + 강원대학교 최돈묵⁺

G. B. Ko · D. M. Choi⁺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제점으로는 화재조사 법률의 기능별 분산 적용, 각 기관별 독자적인 화재조사 실시,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전무,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미비, 화재조사 정보공유 시스템 취약, 방화 원인조사 시스템 취약을 들 수 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화재조사 법률 통합, 유관기관 합동조사,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조기 도입,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확충, 화재조사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 도입, 방화 원인조사를 위한 화재조사팀 운영을 들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deduce problems and grope for its solution by investigating the general operation status about the present fire investigation in Korea. As for the problems,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at they

are application of diversion by the function of law for fire investigation, execution of individualized fire investigation by each institution, total lack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 for fire investigation, and weakness of cause investigation for arson. The reform measures are as follows: the unity of law for fire investigation, joint investigation by the related institutions, early introduction of civil fire investigation expert system, extension of special research institutes for fire investigation, introduction of system for sharing information of fire investigation, and operation of fire investigation team for cause investigation for arson.

Key words ; Fire investigation, Arson

+ fire@kyungwon.ac.kr

I. 서론

최근 우리들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기술의 발달 및 사회 환경의 변화로 화재, 폭발 등 각종 재난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산업발전으로 인한 전기, 유류, 가스, 화공약품 등 에너지 사용의 증가로 화재발생의 위험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그 중에서도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형식의 방화와 화재보험금을 노린 방화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점차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화재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재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밝힘으로써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 조사 분석결과를 각종 법령개정 등 화재 예방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다시는 그와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화재관련 소송에 적극 대비해야 하는 등 과학적인 화재현장 조사의 필요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¹⁾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화재조사 분야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화재조사의 특징

화재조사란 발화부, 발화원인 및 화재(또는 폭발)에 이르게 된 경과를 결정하는 일련의 작업 과

정이다²⁾. 이러한 화재조사과정은 기술과 과학, 그리고 각종 지식이 포함된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사실의 분석, 사실적 자료의 수집을 객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화재조사는 현장성, 신속성, 정밀과학성, 보존성, 안전성, 강제성 등의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화재현장은 화재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이 숨어 있는 귀중한 보고(寶庫)이다. 그리고 화재현장은 어느 한 기관이 화재조사를 위한 발굴 활동으로 현장을 훼손할 경우 다른 유관기관에서는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조사활동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화재현장은 전 화재조사관련 기관이 공유해야하는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유관기관 합동조사가 꼭 필요한 것이다.

2. 화재조사의 구분

화재조사는 단순히 발화원만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를 발생시킨 요인을 비롯하여 화재 진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 즉 발화원 발견, 통보, 초기소화상황, 연소 확대 요인, 피난상황 및 소방시설 등의 상황을 규명하는 원인조사와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 인지를 조사하는 피해조사로 구분된다.

3. 과학적인 화재조사 방법2)

화재조사는 화재발생당시의 화재현상을 중심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이고 제도적인 화재조사를 위해서는 Fig. 1과 같이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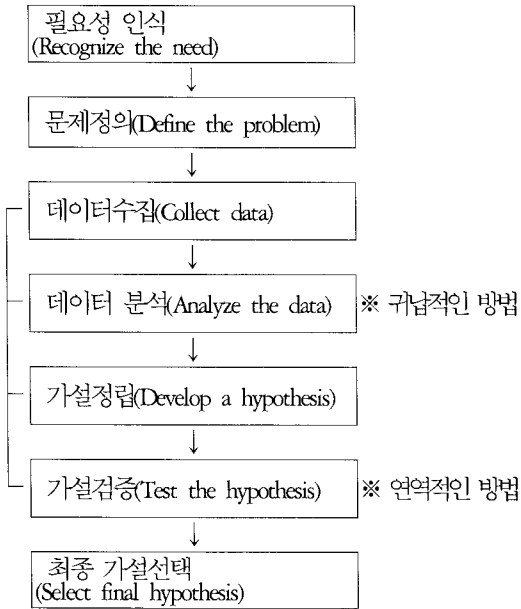


Fig. 1. The scientific fire investigation and analysis method.

3.1. 필요성인식

화재나 폭발이 일어났고, 장래에 이와 유사한 화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원인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문제의 존재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3.2. 문제정의

문제의 존재가 결정되고 나면 화재조사자는 어떤 방법에 의해 문제가 풀릴 것인지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현장검증, 이전에 이루어진 사고조사의 재검토, 증인이나 다른 관련자 인터뷰 및 과학적 검사를 병행하여 적절한 출화원과 화재원인조사가 이루어진다.

3.3. 데이터 수집

관찰, 실험, 다른 직접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에 의한 화재에 대한 사실의 수집단계이다. 이것은 관찰이나 경험에 바탕을 두고 검증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적 데이터라 한다.

3.4. 데이터 분석(귀납적 추론)

수집된 경험적 데이터의 전부를 화재조사자의 지식, 교육 및 경험에 비추어 세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으로 모든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는 귀납적 추론에 의하여 분석한다. 주관적이나 추리적인 자료는 분석에 포함될 수 없고, 관찰이나 실험에 의해 확실히 입증될 수 있는 사실만을 포함해야 한다.

3.5. 가설정립

화재조사자는 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출화원, 화재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설을 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설을 정립할 때는 화재조사자가 수집한 경험적 데이터만을 의존하여야 한다.

3.6. 가설검정(연역법 추론)

가설의 검정은 화재조사자의 연역적 추론을 원칙으로 하며 실험 등에 근거하여야 한다. 만약 가설이 연역적 추론에 상반된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폐기하거나 새로운 가설을 설정 검증해야 한다. 이 검정은 새로운 자료의 모음이거나 현존하는 자료의 재분석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 과정은 모든 가능한 가설이 검정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만약, 가설이 검정되지 않는다면 화재원인은 미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7. 최종 가설선택

위와 같은 일련의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 가설이 최종 검정된 경우 화재원인조사는 결정되는 것이다.

4. 화재원인조사 과정

과학적인 화재조사 방법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화재는 다음 5가지의 주요 원인조사 과정을 포함한다. Fig. 2는 화재원인조사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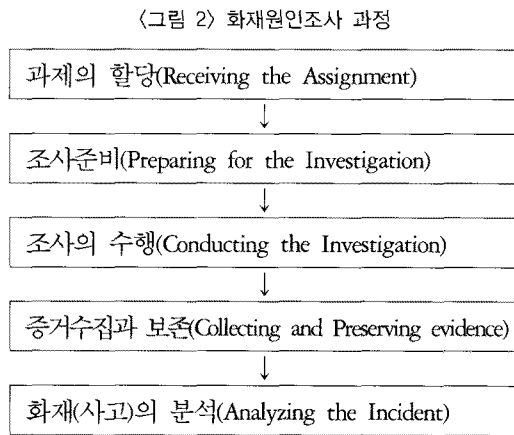


Fig. 2. The procedure of fire causes' investigation and analysis.

4.1 과제의 할당

화재조사자는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고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즉, 화재조사자는 발화원, 화재원인, 책임을 규명하기를 기대 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화재조사자는 화재원인조사 결과가 민형사 재판을 대비한 보고서이며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개정 등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4.2 조사의 준비

화재조사자는 자신의 역할과 화재조사기자재를 정리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예비계획(Preplanning)은 효율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사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준다. 또한 화재조사기자재 및 조사인력을

예측하는 것은 초기의 현장조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4.3 조사의 수행

화재조사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실제 화재조사는 각기 다른 단계와 과정을 거치게 되며, 할당된 화재조사의 목적에 따라 행해진다. 화재조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현장조사와 타인에 의해 작성된 사전현장 문서 검토
- ② 사진과 도표로 이루어진 현장 문서 검토
- ③ 증거인식
- ④ 증인인터뷰
- ⑤ 다른 조사결과와의 분석과 검토
- ⑥ 다른 정보와 데이터의 수집과 인식

4.4 증거수집과 보존

중요한 물리적 증거는 향후 심화검증, 평가 및 법원에서의 발표를 위해 적절히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4.5 화재(사고)의 분석

수집된 모든 자료는 과학적 방식에 의해 분석되어야 하며 화재의 발화지점 설명, 원인 및 책임에 대하여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5. 미래의 화재와 대책

미래의 화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사회와 과학의 진보에 따른 화재유형의 변화다. 예방기술과 인지 기술이 함께 발달되면서 복잡화되어 가는 발화원에 대한 규명의 한계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

이는 반면, 그에 대응하는 원인규명 수요의 질적 향상이 조사의 강도를 높게 만들고 조사 분야의 저변화로 전문가간 또는 법정에서의 다툼 또는 지금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순 과학적 해석을 떠나 법정과학의 기반으로서의 조사결과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방화의 증가예상이다. 이미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서 그 구조적 문제와 유형이 검증된바 있으며, 분명히 전기화재와 방화의 비율이 역전되는 날이 올 것이다. 따라서 화재조사에 종사하는 각 계의 전문가들은 그 위치와 임무에 맞는 방화증명이나 방화범 수사에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6. 제조물책임법과 화재조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조물책임법과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화재조사 결과에 따른 법정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과학적이고 제도적

인 화재조사의 역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III. 본 론

1. 화재발생 현황³⁾

Fig. 3에 연도별 화재발생 추이를 나타냈다. 화재발생 추이를 분석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 1만 건 이내에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화재건수가 1987년 1만 건 돌파를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1994년 2만 건을 넘어섰고, 1998년 연간화재 3만 건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2001년 36,169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04년 32,737건, 2005년 32,340건, 2006년 31,778건으로 증가 또는 감소를 반복하는 보합추세를 보이고 있다.

1.1. 화재원인별 현황

Fig. 4에 주요 화재원인별 추이를 나타냈다. 화재발생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줄곧 전기화재가 1위, 담뱃불화재가 2위, 방화가 3위였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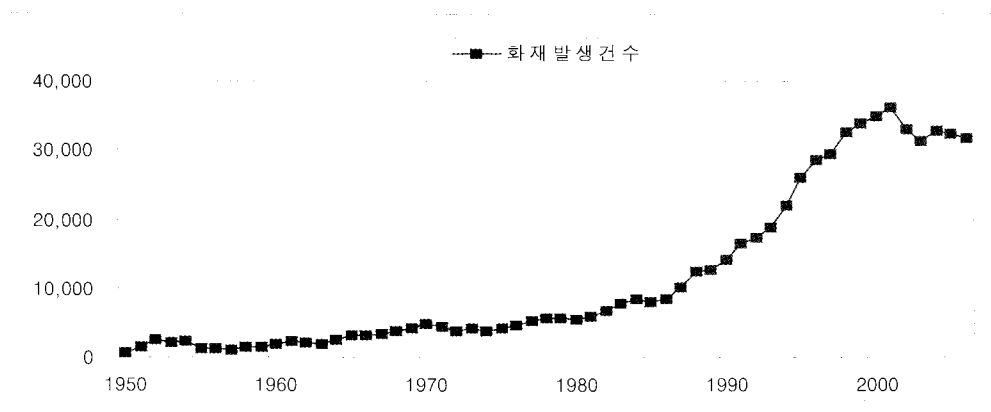


Fig. 3. The fire occurring trends of according to the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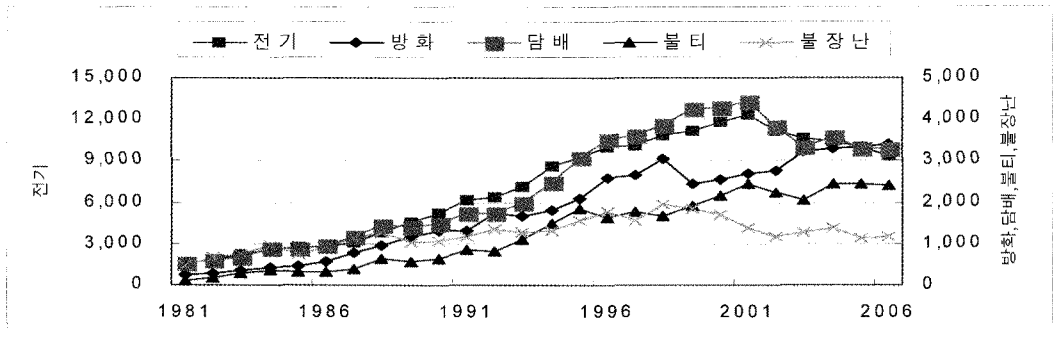


Fig. 4. The trends of prominent fire cau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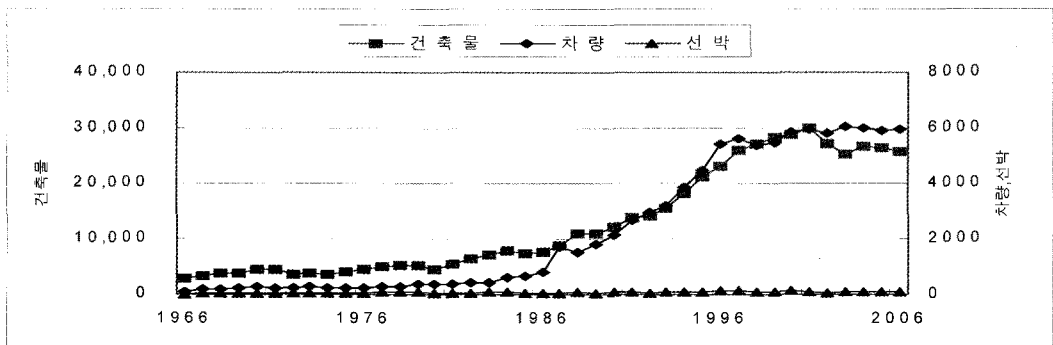


Fig. 5. The fire occurring trends of according to the places.

2005년부터는 방화가 담뱃불화재를 추월하더니 2006년에는 100여건 이상을 상회하는 특색을 보여준다. 전체화재의 30%이상을 차지하던 전기화재는 2006년도에 있어 29.5%로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점유율은 여전히 1위이며, 방화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2. 화재장소별 현황

Fig. 5에 화재장소별 화재발생 현황을 나타내었다. 화재장소별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물화재는 2001년 30,078건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차량화재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6,049건(19.29%)을 기점으로 증가세는 주춤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5,931건이 발생하여 18.66%를 차지하고 있다.

1.3. 인명피해 현황

Fig. 6에 인명피해 발생 현황, Fig. 7에 원인별 사망자 그리고 Fig. 9에 원인별 부상자 현황을 나타내었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에 있고 사망자는 2003년도를 제외하고는 500명 전후에서 머물고 있지만 부상자는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3년도 사망자 및 부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동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사건(사망192명,

부상148명)을 반영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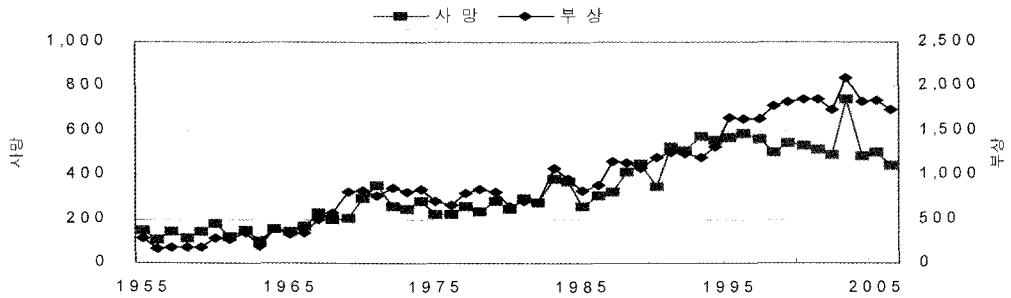


Fig. 6. The fire casualties according to the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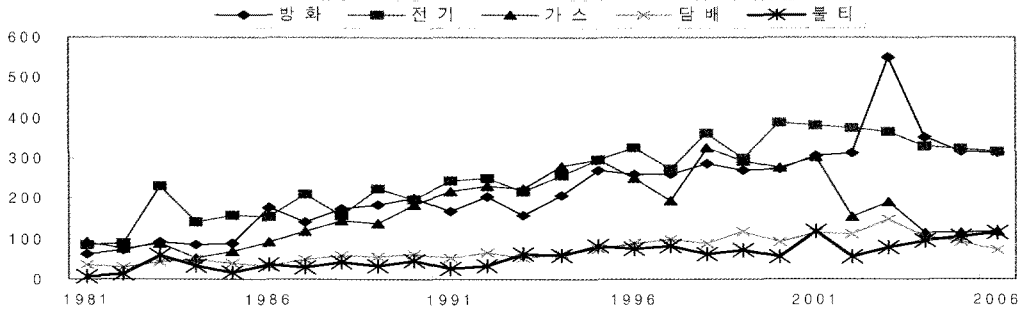


Fig. 7. The fire deaths according to the fire cau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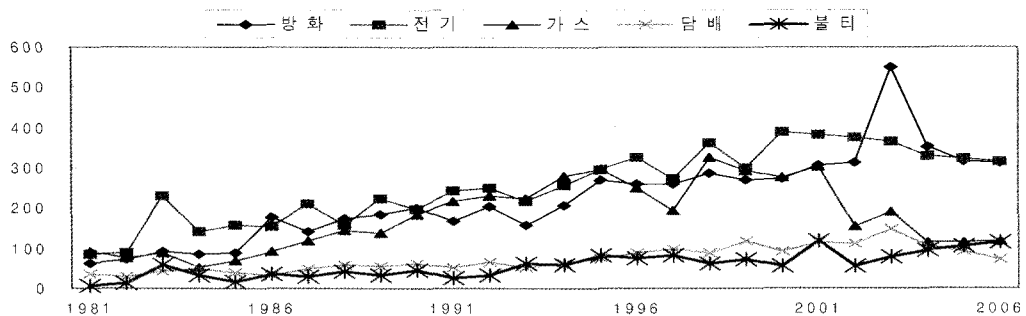


Fig. 8. The fire injuries according to the fire causes.

1.4. 재산피해 현황

Fig. 9에 전체화재건수와 화재재산피해액 발생

현황을 나타내었다. 재산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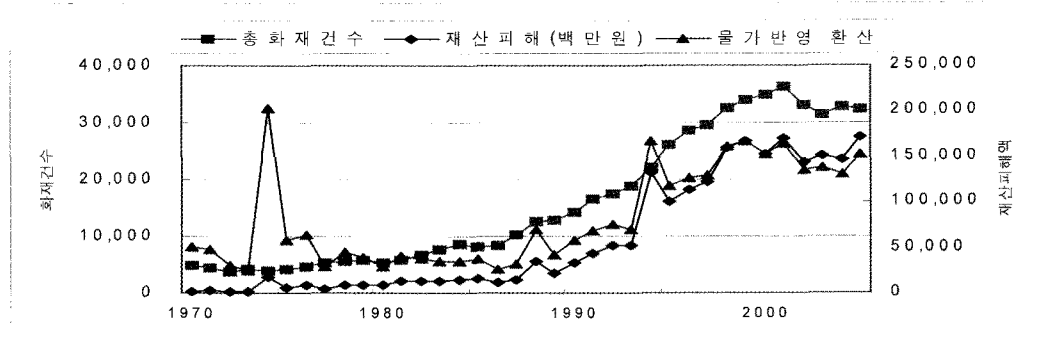


Fig. 9. The trends of total occurred fires and loss of property.

도 접어들면서 화재건수와 재산피해액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화재피해액의 급격한 증가는 화재발생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무품의 자산가치 증대와 피해규모의 대규모화로 인해 화재1건당 피해가 커진 것이 주요요인으로 판단된다.

2. 화재조사제도의 문제점

2.1. 화재조사 법률의 기능별 분산 적용

우리나라의 화재조사는 헌법 제 34조 제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

이념에 따라 경찰, 소방, 전기, 가스 및 전기안전공사, 보험회사 등 화재조사관련 기관이 각 기관의 목적에 맞게 화재조사를 하고 있다. 각 기관별 법적근거와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경찰의 경우 형법 제 13장(방화와 실화의 죄)에 근거하며 실방화 범죄의 수사가 목적이다. 둘째, 소방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5장(화재의 조사)에 근거하며 소방행정 기본자료 수집이 목적이다. 셋째, 가스전문기관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 35조(보고·조사), (사고의 통보 등)에 근거하며 가스사고 예방과 홍보가 목적이다. 넷째, 전기전문기관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52조(사업)에 근거하며 전기사고예방과 홍보가 목적이다. 다섯째, 보험사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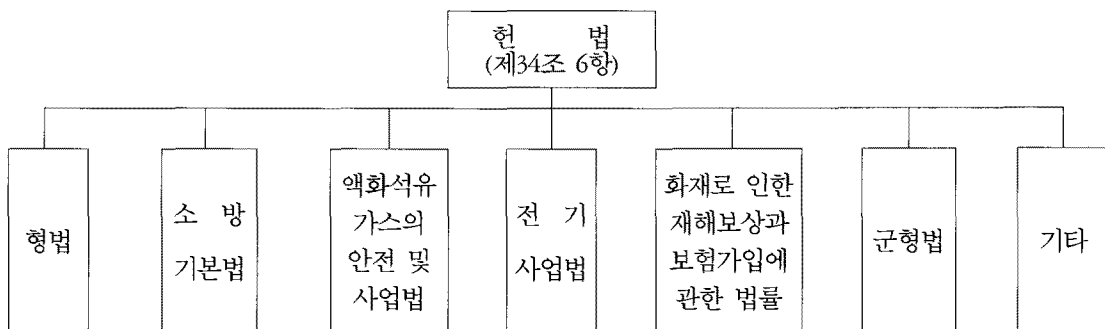


Fig. 10. The legal system, related with fire investigation.

Table. 1 Fire investigation institutions and legal bases

조사기관	법적근거	비고
경찰	·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 164조 ~ 제 176조)	범죄수사
소방	· 소방기본법 제5장 화재의 조사 (제 29조 ~ 제 33조)	소방행정++ 기본자료
가스전문기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제35조(보고조사 등), 제35조의1(사고의통보 등)	피해보상
전기전문기관	· 전기사업법 제78조(사업)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예방과 홍보 전기화재 감정
보험사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16조(안전점검) 등	보험금 지급
군수사대	· 군형법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 66조 ~ 제 67조)	군인범죄 수사

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16조(안전점검)에 근거하며 보험금 지급이 목적이다

그리고 법률에 위임근거는 없으나 화재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당연히 화재조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Fig. 10은 화재조사 관련 법률제도가 고, Table 1은 화재조사기관 및 법적근거이다.

2.2. 각 기관별 독자적인 화재조사 실시

우리나라의 화재조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방, 경찰,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보험회사, 군수사대가 독자적으로 화재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화재조사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화재규모와 성격에 따라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화재조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2.3.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전무

화재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경우 법률의 위임조항은 없으나 화재조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화재조사 결과가 민·형사책임은 물

론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와 상당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권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같은 민간 화재조사전문가들이 필요하나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2.4.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미비

현재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으로는 경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시험연구원,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시험연구원 등이며, 소방의 경우 중앙소방학교와 서울소방학교에 소방과학연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화재원인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연구 분석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5. 화재조사 정보공유 시스템 취약

화재조사는 물리학, 연소학, 건축학, 방화심리학 등 전문이론 분야뿐만 아니라 화재현장 조사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어느 한 기관의 교육과 지식축적 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소방, 경찰,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보험 회사 등 전문기관의 현장경험과 대학의 학술 지식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6. 방화 원인조사 시스템 취약

방화는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주는 범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방화는 살인·강도·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강력범죄에 속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방화 범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일 신문의 사회면에 오르내림으로써 사회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방화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인식의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방화 원인조사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시스템이 상당히 취약하다.

3. 화재조사 제도 발전방안

3.1. 화재조사 법률 통합

Fig. 11에 화재조사관련 법률 통합 모델을 나타내었다. 현재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화재조사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법, 소방기본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전기사업법, 균형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화재조사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화재조사법”을 제정 운영해야 한다.

화재조사법에는 화재조사에 관한 기본이념과 유관기관 상호 협조의무, 그리고 화재현장의 합동조사의무, 민간 화재조사전문가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유관기관 합동조사

Fig. 12에 기관별 화재현장 도착시간을 나타내었다. 화재현장은 화재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이 숨어 있는 보물창고이다. 이러한 화재현장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 화재조사를 한다면 다른 기관(개인)은 증거물이 훼손되어 화재조사를 할 수 없다. 소방의 경우 화재신고를 접하고 가장 먼저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조직보다 화재조사 관련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따라서 화재조사는 소방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필요시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합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방화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현 행 >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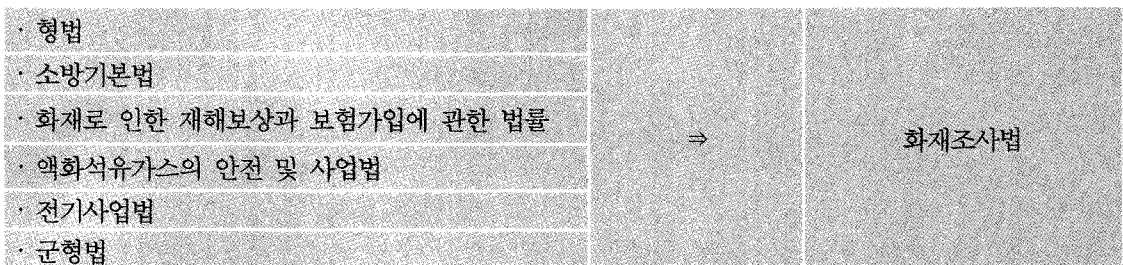


Fig. 11. The unification model of legal system, related with fire investi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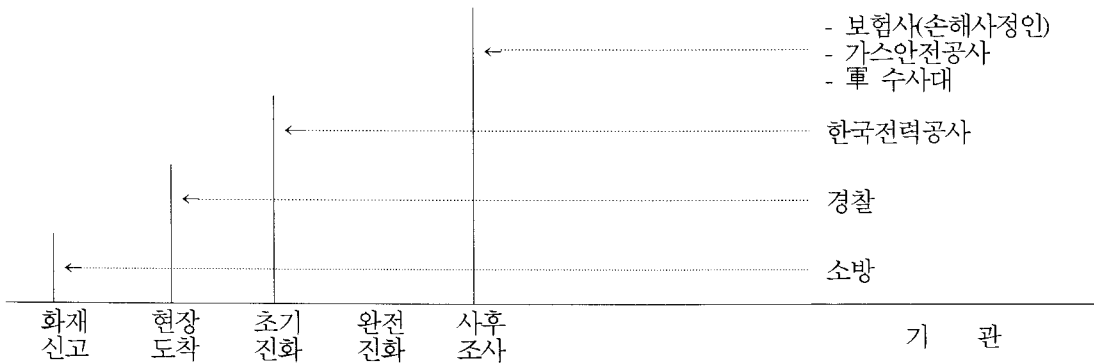


Fig. 12. The arrival time according to the related authorities.

3.3.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조기도입

화재보험을 들은 화재피해이재민들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이재민들의 경우 화재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가 많고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일반적인 법률지식 부족으로 화재조사에서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 화재조사 관련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이재민들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행 변호사제도와 같은 민간 화재조사전문가제도가 조기에 도입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화재조사관협회(NAFI : National Association of Fire Investigation)에서 인정하는 "화재폭발조사관(CFEI : Certified Fire & Explosion Investigation)"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화재폭발조사관(CFEI)은 화재조사 관련 교육 이수자 또는 화재폭발현장 조사 경력자 등 최소 자격요건에 관한 1차 심사를 거친 후 2차 필기 시험에 합격하여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필기 시험은 NFPA 921의 내용에 대한 영문으로 된 100문항 시험테스트 결과 7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4.4.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확충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조사분석팀,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의 연구소 등에서 화재조사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기관별 존립 목적을 위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경우 일선 경찰관서에서 의뢰를 요청해온 경우에만 감정⁴⁾에 응하고 있다. 소방의 경우 중앙소방학교와 서울소방학교에 소방과학 연구소가 있기는 하나 인력 및 장비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화재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제공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원인규명 미흡으로 화재피해이재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 및 각 시도 소방본부 산하에 소방과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정확한 화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4.5. 화재조사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 도입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는 각종 정보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조사 관련 지식축적 및 유관기관들 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화재조사학회, 화재소방학회, 강원화재조사연구회 등은 정

기적인 화재조사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와 화재 재현실험 등 공동연구 활동을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물을 책으로 발간한다면 우리나라의 화재조사는 급속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5.5 방화 원인조사를 위한 특별 화재조사팀 (T/F Team) 운영

방화는 화재현장의 증거가 화재로 인해 연소되어 버리기 때문에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한 방화범죄의 경우 법정기소를 전제로 화재조사 현장의 증거물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방화로 추정되는 경우 소방과 경찰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특별 화재조사팀(T/F team)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I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화재조사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소방, 경찰 등 공공기관 중심의 화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재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재현장은 발화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이 숨어있는 귀중한 보고(寶庫)이고 어느 한 기관이 조사를 위해 발굴활동으로 화재현장 훼손할 경우 다른 유관기관에서는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관기관들 간에 합동조사가 필요하나 화재조사 관련 법률이 기관별 목적에 맞게 분산되어 적용 운영되기 때문에 화재조사 과정에서 업무충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발전방안으로는 각 기관별 분산되어 적용되고 있는 화재조사 법률을 가칭 화재조사법으로 통합운영하며, 일

반적인 경우 소방 중심으로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방화의 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 중심의 화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타 유관기관 합동 현장조사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 제도와 같은 화재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민간 화재조사전문가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중앙 및 각 시도 소방본부 산하에 소방과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며 유관기관들 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화재조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법률 제6109호(제정 2000년 1월 12일)
2. NFPA921, 「Guide for Fire and Explosion Investigations 2004 Edition」, NFPA, P.14
3. 소방방재청, 「2006년도 화재통계연감」, 소방방재청, 2007, pp. 3-14
4. 보험업법 제 185조 내지 188조(법률 제7428호)